

保險產業의 價格自由化에 관한 研究

羅 東 敏

本稿는 被保險者의 危險程度에 關하여 정보의 不均衡性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全體 市場參與者의 效用과 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價格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分析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現제 政府가 추진중인 價格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本稿의 分析結果에 따르면, 情報의 不均衡下에서 自由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價格자유화는 전체 保險이용자의 效用을 증대시키는 效果를 가져오나 自由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 전체적인 效用증대 效果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料率과 保障範圍를 위험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單一·共同料率을 제시하는 契約을 主契約으로 구매하게 하고, 補充契約인 特約部分에서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價格으로 적절한 保障범위를 선택하게 하도록 政府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계약과 보충계약으로 구성된 이러한 補助契約은 기존의 單一·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파레토개념에서 우월한 계약으로 시장전체에 純效用증대의 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告知義務의 強化, 危險分類 및 選擇 業務의 效率化 등으로 保險시장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實質적인 價格의 完全自由화를 실시하여 파레토最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保險市場의 特性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 시장참여자의 效用과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價格政策을 펴야 하며, 現제 추진중인 保險商品 價格自由化計劃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I. 序 論

상품의 품질에 關해 販賣者와 購買者 사

筆者: 本院 專門研究員

* 草稿를 읽고 귀중한 論評을 주신 崔範樹, 黃

이에 존재하는 情報의 非對稱性(informational asymmetry)이 市場行態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Akerlof (1970)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Akerlof는 구매자가 시장에서 여러가지 서

로 품질이 다른 상품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즉 상품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그 시장은 실패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非效率的으로 운영됨을 보여주었다.¹⁾ Akerlof의 연구 이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내에서 각 經濟主體들의 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保險 및 勞動市場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保險市場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간에 정보의 비대칭현상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는, 被保險者나 保險契約者들은 被保險者의 損失確率(loss probability)을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알고 있는 데 반하여 保險事業者들은 피보험자의 손실확률에 관하여 制限的이고 不完全한 情報밖에 가지

지 못하는 데 있다.²⁾ 만일 각 피보험자들의 손실확률의 차이가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관측되어 價格(保險料)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逆選擇(adverse selection)問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나게 된다. 비록 政府의 市場規制나 保護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장내 경제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被保險者에 대한 保障範圍를 축소시킴으로써 市場參與者의 效用을 감소시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한다.

政府規制가 적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危險分類(risk classification)過程의 잘못된 직접적으로 보험사업자의 營業收支惡化나 市場失敗를 야기하기 때문에, 情報不均衡에 기인한 逆選擇으로 인하여 시장이 실패하거나 비효율성이 증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보험사업자들은 危險分類業務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업무강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의 보험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로 경쟁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고, 寡占體制下에서 保守的인 價格政策을 실시함으로써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엄격한 危險分類節次를 거쳐 適正한 保險料를 산출하여 제시할 誘引을 갖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金融의 自律化·開放化·國際化 趨勢에 따른 보험정책의 변화로 기존의 寡占的 市場에서 본격적인 경쟁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의

晨鉉, 金俊逸 박사께 깊이 감사드리며, 원고교정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鄭炳悅 연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논평과 도움은 본고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誤謬는 전적으로 筆者의 책임이다.

- 1) 情報의 非對稱性이 존재하면 關聯情報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보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이는 最適의 配分과 最少費用의 運營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非效率的 市場이 되게 한다.
- 2) 이와 더불어 保險市場內의 또다른 보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은 보험사업자가 제시하는 商品의 品質(約款)에 대하여 계약자가 완전한 지식이나 정보를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불완전한 계약을 야기하고 保險契約의 失效·解約率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보수적이고 정부규제적인 價格政策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에 따라 公正한 價格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펴나가야 할 시점에 왔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93년 12월 保險商品 價格自由化計劃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가 예시한 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계획은 각 보험산업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나 그 기본방향은 대체로 같다. 즉 보험사업자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他金融產業의 價格自由化政策과 비슷하게 自由化의 幅을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그 폭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한 가격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보험산업에 대한 이러한 가격자유화정책은 두가지 점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전체 市場參與者를 고려한 가격정책이 아니고 供給者爲主의 價格政策인 것이다. 단계별 가격자유화계획은 保險事業者의 受容力, 實施의 容易性, 市場衝擊의 極小化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정책당국이나 공급자 위주의 가격정책으로, 전체 市場參與者의 效用이나 期待利益의 極大化를 도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선행연구 없이 수립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보험시장이 타금융산업과 시장형태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금융산업에서 사용한 정책방향의 틀을 일반적으로 원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타금융산업의 상품가격은 資金의 需要·供給 原則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반하여 보험상품의 가격은 大數

의 法則(law of large numbers)을 근거로 한 위험발생확률이 기본적인 가격결정변수가 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위험확률에 관한 정보는 가격산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보험시장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不完全競爭市場이기 때문에 타금융산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가격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가격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보험산업의 특수한 가격산출구조와 시장내에 상존하는 情報의 非對稱性을 고려하여 모든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本稿는 보험사업자들이 被保險者의 危險程度에 대하여 불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이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價格 및 保障範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전체 市場參與者의 效用과 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해 政策當局은 어떠한 價格政策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理論的 分析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價格自由化 推進計劃方向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保險料(價格)와 保障範圍(數量)를 기반으로 保險의 需要供給均衡模型을 설명한 다음, 제Ⅲ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完全情報市場에서의 균형모형을 제시하고, 나아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不完全情報市場에서의 균형모형을 제Ⅳ

장에서 도출할 것이다. 제Ⅳ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Ⅴ장에서는 정부에 의하여 예시된 價格自由化計劃의 推進方向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改善策을 제시한다. 제Ⅵ장은 要約 및 結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Ⅱ. 保險의 需要供給模型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두 종류의 利用者, 즉 高危險 保險利用者と 低危險 保險利用者로만 구성되어 있는 保險市場을 고려한다. 危險程度는 각 보험이용자의 손실확률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보험이용자의 富의 水準은 W 로 동일하며, 사고발생시 損失額도 X 로 역시 같다.³⁾ 보험이용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Q 를 補填해 주는 保險契約을 구입하여 사고발생시 손실을 보상받는다. 사고시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받는 額數(保險金) Q 는 손실액 X 보다 크지 않을 것이므로 $X \geq Q$ 이 된다. 이러한 손실발생의 확률은 低危險利用者の 경우 θ_L , 高危險利用者の 경우 θ_H 로 각각 표시할 수 있으며, 고위험이용자의 사고확률이 높으므로 $\theta_L < \theta_H$ 가 된다. 또한 전체 시장참여자는 N 명이며 이중 저위험이용자는 N_L 명이고 고

위험이용자는 N_H 명으로, $N = N_L + N_H$ 가 된다. 이들 보험이용자 개개인이 구매하는 保障範圍는 저위험이용자인 경우 Q_L , 고위험이용자의 경우 Q_H 로 표시할 수 있다. 保障範圍의 單位當 價格 p_i 는 저위험에 대해 p_L , 고위험에 대해 p_H 로 표시할 수 있고, 각 위험에 대한 보험료 P_i 는 저위험이용자인 경우 $P_L = p_L Q_L$, 고위험이용자인 경우 $P_H = p_H Q_H$ 가 된다. 따라서 計理的으로 公正한 保險料(actuarially fair premium)는 손실확률의 정도에 따라 $P_L = \theta_L Q_L$ 과 $P_H = \theta_H Q_H$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보험료의 결정시 피보험자의 위험률만을 고려하여 책정할 때 보험료는 각 보험이용자들이 구매한 保障範圍의 函數가 되며, 보험이용자의 손실확률을 기울기로 하여 원점을 통과하는 1次函數가 될 것이며, 이를 公正保險料線(fair premium line)이라 부른다.

1. 保險契約의 供給

앞의 假定들로부터 保險契約 S'_i 의 性格을 保障範圍 Q'_i 와 保險料 P'_i 의 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보험계약 S'_i 는 XY 軸을 가지는 2次元 平面에서 (Q'_i, P'_i) 로 표시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사업자가 손실확률 θ_i 를 가진 보험이용자에게 판매하는 보험계약이 公정보험료선인 $P_i = \theta_i Q_i$ 선보다 위쪽에 놓여진다면(즉 보험계약이 손실확률을 기초로 한 期待損失額보다 비싸게 팔리면), 이는 주어진 保障範圍에서

3) 生命保險에서 損失額 X 는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피보험자의 期待未來所得흐름의 現在價値로 측정될 수 있으며, 損害保險에서는 被保險物件의 現在價値로 측정된다.

販賣保險料가 公正保險料보다 크므로 보험사업자가 純利益을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P_i = \theta Q_i$ 선 아래의 점들은 이를 판매한 보험사업자에게 純損失을 보게 하는 보험계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업자는 公正보험료선상이나 그 위쪽에 놓이는 보험계약만을 공급하려 할 것이다.

또한 보험시장은 保險事業者의 進入과 退出이 자유롭고 보험사업자들이 서로 공모나 담합을 하지 않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데 運營費用이 들지 않고 危險分類費用도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이러한 보험사업자는 오직 한가지의 보험계약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保險契約의 需要

보험이용자들은 주어진 富(wealth)의 水準, 損失額(loss amount), 損失確率(loss probabilities), 危險回避程度(degree of risk aversion)를 감안하여 자신에게 최대의 효용을 주는 보험계약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4) 보험이용자들은 富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가($U'(W) > 0$)하나 富가 커짐에 따라 富의 單位增加에 따른 限界效用은 遞減($U''(W) < 0$)한다고 가정한다. 두번째 가정은 보험이용자의 性向이 危險回避의임을 의미한다.

5) 이러한 無差別曲線은 式 (1)의 期待效用函數를 不變(constant)으로 놓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保險料와 保障範圍雙의 軌跡을 표시한 것이다.

富의 水準을 W_1 이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富의 水準을 W_2 라 한다면 期待效用理論에 의하여 보험구매자의 기대효용함수는 식 (1)과 같이 표시될 수 있으며, 보험의 潛在利用者들은 식 (1)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험계약 $S = (Q, P)$ 를 구매할 것이다.

$$EU_i(S) = \theta U[W_2] + (1-\theta)U[W_1],$$

$$i = L, H \dots \dots \dots (1)$$

여기에서, $W_1 = W - P$

$$W_2 = W - X + (Q - P)$$

效用函數 $U(W)$ 는 $U'(W) > 0$ 과 $U''(W) < 0$ 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⁴⁾

이 효용함수를 통하여 보험이용자들에게 같은 選好度를 가지는 保險契約의 軌跡인 無差別曲線을 保險料와 保障範圍를 軸으로 하는 평면에 표시할 수 있다.⁵⁾ 座標 (Q, P) 에서, 이 無差別曲線의 接線에서의 기울기는 Q, P 에 의한 1次 全微分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dEU_i(S) = \theta U'[W - X + (Q - P)]$$

$$(dQ - dP) + (1 - \theta_i)U'[W - P](-dP)$$

$$= 0, \quad i = L, H \dots \dots \dots (2)$$

이를 다시 정리하면,

$$dP/dQ = \theta U'[W - X + (Q - P)] / \{ \theta U'[W - X + (Q - P)] + (1 - \theta_i)U'[W - P] \}$$

$$\dots \dots \dots (2)'$$

로 나타낼 수 있다.

식 (2)'으로부터 보험이용자의 무차별곡선의 형태를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保險의 需要行態를 분석할 수 있다.

3. 均衡條件과 效用水準

保險市場의 均衡條件은 이와 같이 개발된 보험사업자의 공정보험료선과 보험이용자의 무차별곡선을 이용하여 도출된다. 즉 공정보험료선과 무차별곡선을 이용하여 어떤 市場狀態에서 균형이 존재하며, 이 균형에서 각기 다른 위험형태를 지닌 보험이용자들이 어떠한 수준의 효용을 가지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均衡은 보험계약이 제시되었을 때 보험사업자가 그 契約條件(價格이나 保障範圍)을 바꾸려는 어떤 誘引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균형상태의 존재는 그들이 제시한 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사업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보험이용자의 손실확률에 관하여 해당 보험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情報의 量, 그리고 보험사업자의 價格政策에 의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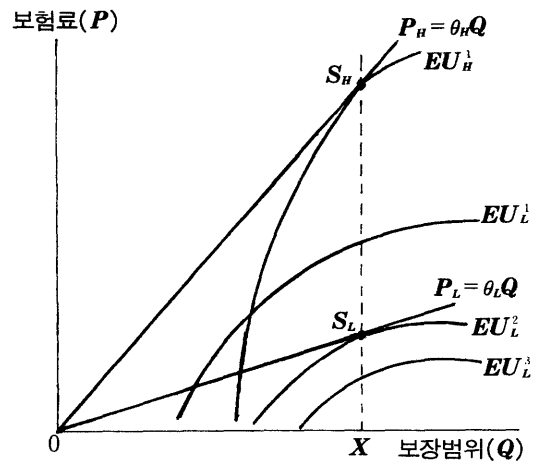
Ⅲ. 完全情報下에서의 均衡

먼저 보험사업자와 보험이용자 모두가 被保險者의 損失確率에 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근거로 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보험시장을 고려하여 보자.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앞 章에서 도출한 保險事業者의 公正保險料線과 保險利用者의 無差別曲線을 分析道具로 사용한다.

保險利用者は 보장범위가 동일하다면 가급적 보험료가 낮은 보험계약을 구매하려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右下側에 있는 무차별곡선 위의 보험계약을 구매함으로써 그들의 效用을 極大化하려고 할 것이다. 즉 [圖 1]에서 저위험 보험이용자는 EU_L^1 이나 EU_L^2 보다 EU_L^3 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이용자의 위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보험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公正保險料보다 싼 보험료를 제시한다면 적자를 볼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업자는 공정보험료선($P_i = \theta_i Q$, $i = L, H$) 아래에 있는 保險契約들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보험이용자는

[圖 1] 完全情報下에서의 均衡



해당 공정보험료선상이나 그 선 위에 있는 계약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보험사업자는 공정보험료선보다 위에 있는 계약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상황이 전개 되면 새로운 보험사업자가 進入하여 보다 저렴한 價格에 同質의 契約을 제시할 것이므로 기존 보험사업자는 보험료를 낮추든지 아니면 새 진입자에게 기존 고객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새로 형성된 보험료에서도 여전히 利益이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상태는 보험사업자의 期待利益이 0이 될 때까지, 즉 保險料가 公正保險線에 놓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보험사업자는 다른 경쟁자의 행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 기대이익은 0이 되나 그들의 계약조건을 바꿀 아무런 유인을 갖지 못할 것이다.

만약 공정보험료선상의 계약이 제공된다

- 6) 接點에서 公正保險料線과 無差別曲線의 기울기는 같다. 이 접점에서 공정보험료선($P_i = \theta_i Q_i$)의 기울기는 θ_i 이기 때문에 식 (2)로 표시되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dP/dQ 도 θ_i 이어야 하며 이는 $Q = X$ 일 때, 즉 보험계약자가 豫想損失額과 동일한 保障範圍의 契約을 구매할 때 얻어진다. 그러므로 完全情報下에서는 모든 보험계약자들이 사고발생여부에 관계없이 同一한 富의 水準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보장범위까지 보험을 구매할 것이며 이 때 그들의 效用은 極大化된다.
- 7) 만일 각 保險事業者들이 각각 다른 保險料를 제시한다면 보험이용자들은 같은 조건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계약을 구매할 것이다. 이 경우 顧客에게 불리한 계약은 도태될 것이므로 이를 제시한 사업자는 經營上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市場에서

면 보험이용자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無差別曲線과 公正保險料線의 接點($S_i; i=L, H$)으로 표현되는 계약을 선택할 것이고, 보험사업자들은 이 계약을 변경할 아무런 유인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사업자와 보험이용자가 被保險者의 損失確率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사업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면, 均衡接點이 존재할 것이고 모든 보험이용자는 이 接點에서 완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계약을 구매할 것이다.⁶⁾ 이 경우에 보험사업자와 보험이용자간에 파레토最適(Pareto optimal)의 資源配分이 이루어진다.

IV. 不完全情報下에서의 均衡

이 章에서는 보험이용자는 피보험자의 손실확률을 알고 있으나 보험사업자는 危險分類能力의 不足으로 고객의 정확한 위험정도를 파악할 수 없거나 政府規制로 인하여 이를 구분·취급할 수 없어 보험사업자와 보험이용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논의를 확장하여 보자. 이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도 앞에서와 같이 보험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의 행동을 예측하며 손실을 주는 개별계약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7) 8)}

1. 不完全情報下에서의 共同均衡

만일 보험사업자들이 보험이용자의 위험을 제대로 분류할 수 없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平均公正保險料를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균형을 여기서는 共同均衡(pooling equilibrium)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균형상태에서는 모든 보험이용자는 價格이나 保障範圍에서 같은 품질의 보험계약을 구매하게 될 수밖에 없다.

[圖 2]와 같이 각 危險集團別 公正保險料線이 OP_L 과 OP_H 로 표시된다면 平均公正保險料線 OP_{LH} 의 式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_{LH} = \{\lambda\theta_L + (1-\lambda)\theta_H\}Q = \theta_{LH}Q \dots\dots(3)$$

여기에서 λ 는 시장내 저위험이용자의 비율로 $\lambda = N_L / (N_L + N_H)$ 임.

평균공정보험료선 OP_{LH} 은 λ 값에 따라 변하는바, 저위험이용자의 比率이 높은 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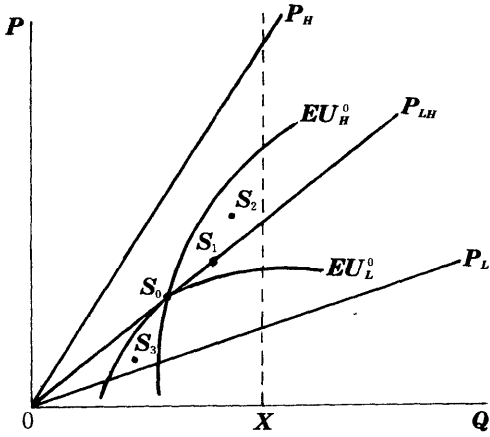
서는 λ 값은 커지고 평균공정보험료선 OP_{LH} 의 기울기 θ_{LH} 는 작아져 OP_{LH} 가 저위험집단의 공정보험료선 OP_L 에 가까워진다.

만일 평균공정보험료선과 저위험이용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제공되는 계약을 [圖 2]의 S_0 라 하면 이 계약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最適의 契約이 될 것이다. 보험사업자는 S_1 과 같이 평균공정보험료선상의 다른 점에서의 계약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저위험이용자는 효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S_1 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S_0 에 머무를 것이다. 또한 평균공정보험료선 위의 점인 S_2 는 보험사업자에게는 유리하나 新規進入者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期待純利益이 0인 평균공정보험료선상의 S_0 으로 回歸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S_2 는 저위험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므로 저위험이용자로부터 회피될 것이다. 만일 S_3 과 같은 계약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제시된다면 이 계약은 S_0 보다 저위험이용자에게 유리한 계약이며, 저위험이용자에게만 팔린다면 보험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이므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업자들이 S_3 을 제공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이 계약을 제공할 것이고, S_0 를 구매하는 저위험이용자의 비율이 낮아져 평균공정보험료선이 위로 回轉하여 S_0 는 손실을 주는 계약이 되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이용자는 S_3 을 구매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S_3 역시 보험사업자에게 期待損失을 주는 계약이 되어 보험계약이 제공되

退出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 보험사업자들이 다른 보험사업자가 제시한 보험계약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獨立的으로 행동하는 것은 競爭的 市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보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행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8) 보험사업자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제시할 때, 平均的으로는 물론 個別的으로도 損失이 생기지 않는 계약만을 제공하는 價格戰略을 구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圖 2] 不完全情報下에서의 共同均衡



지 않아 市場失敗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보험사업자의 행동을 예측한다면 S_3 으로 이동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업자는 S_0 에 머물 것이며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사업자가 보험이용자의 손실 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다른 사업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에 共同均衡이 존재한다.

2. 不完全情報下에서의 分離均衡

보험사업자와 보험이용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만약 보험사업자가 고위험이용자에게 充分한 保障範圍를 제공하고, 저위험이용자에게 部分的인 保障範圍를 제공하는 두가지 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균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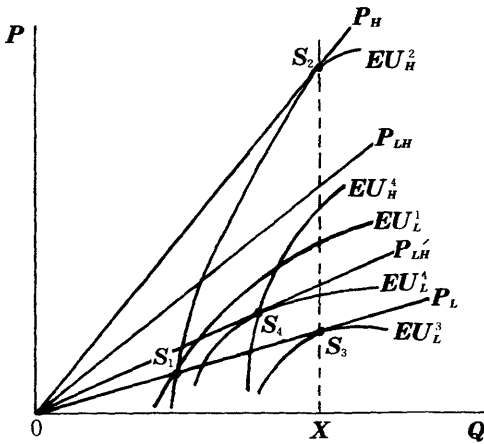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보험사업자는 자신에게 손실을 주는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 것

이므로 만일 위험에 따라 두가지 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각 위험집단의 공정보험료선상이나 그 위에 있는 계약일 것이다. 이 경우 最大의 保障範圍를 가지는 [圖 3]의 S_2 와 S_3 는 完全情報市場에서 각 보험이용자에게 최대의 효용을 줄 것이나 정보의 비대칭상태에서는 보험사업자가 손실확률을 기초로 하는 위험정도에 따라 이용자를 차별화하지 못할 것이므로 시장실패를 야기할 것이다. 즉 S_2 보다 S_3 가 유리한 계약이므로 누구나 S_3 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며, 보험사업자는 보험이용자의 위험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위험선택능력이 부족하므로 고위험 보험이용자들이 S_3 를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보험이용자가 S_3 를 구매할 경우 S_3 는 평균공정보험료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험사업자에게 손실을 줄 것이므로 보험사업자는 S_3 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S_1 에서 S_3 사이의 저위험 공정보험료선상의 어떠한 계약도 고위험 보험이용자에게 유리한 계약이므로 판매될 수 없을 것이다. S_1 은 S_2 와 같은 무차별곡선상에 있으므로 고위험이용자는 S_1 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S_2 에 머무를 것이다. S_1 에서 原點 사이의 저위험 공정보험료선상의 점은 고위험이용자에게는 불리한 계약을 제공하므로 安定的이나 S_1 보다 저위험이용자에게 불리하므로 주어진 조건에서는 S_1 이 저위험이용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S_1 과 S_2 계약보다 兩危險集團에

[圖 3] 不完全情報下에서의 分離均衡



계 유리한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契約雙은 平均的으로나 個別的으로 보험사업자에게 손실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보험사업자도 이 계약들을 변경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업자와 보험이용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두가지 계약이 제공될 수 있다면 계약쌍(S_1, S_2)에서 分離均衡(separating equilibrium)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저위험이용자의 비율이 높아 평균공정보험료선 P_{LH} 가 아래로 회전하여 P_{LH}' 이

9) 지금까지의 論議에서는 保險事業者가 平均的으로는 물론 個別的으로도 계약에서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며 이러한 계약을 보험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假定하였다. 따라서 각 危險集團의 公正保險料線上이나 그 위에 있는 계약만이 시장에 제공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Wilson(1976)에 의하여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不完全情報下에서의 均衡을 Wilson均衡이라고도 부른다.

되어 무차별곡선 EU_L^1 을 횡단하게 된다면 평균보험료의 계약 S_1 가 각 위험집단에게 S_1 이나 S_2 보다 유리할 수 있어 共同均衡이 얻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보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행동에 豫測力を 가지고 있다면 시장내에 共同均衡이나 分離均衡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均衡의 形態는 각 危險利用者集團의 構成比率에 의존할 것이다.

3. 不完全情報下에서의 補助均衡

Spence(1978)와 Miyazaki(1977)는 앞에서 설정한 假定을 완화시켜 不完全한 情報下에서 얻어진 共同均衡이나 分離均衡보다 파레토概念에서 우월한(Pareto superior) 새로운 균형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보험사업자들이 個別的으로는 손실이 있더라도 平均的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제공하는 것으로 基本假定을 보다 現實的으로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균형을 도출하였다.⁹⁾ Miyazaki는 보험사업자가 이러한 수정된 價格戰略을 취한다면 共同均衡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앞절에서 개발된 分離均衡이나 혹은 또다른 형태의 分離均衡이 얻어질 것임을 보여주었다. 즉 수정된 價格戰略下에서는 어떤 共同均衡도 分離均衡보다 파레토概念에서 劣等하게 되며 따라서 分離均衡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된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 市

場均衡은 다음의 式 (4)를 극대화하는 契約 雙인 $S_L=(Q_L, P_L)$, $S_H=(Q_H, P_H)$ 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text{Max; } EU_L(S_L) = \theta_L U(W - X + Q_L - P_L) + (1 - \theta_L)U(W - P_L) \dots\dots\dots(4)$$

subject to

$$EU_H(S_H) \geq EU_H(S_L) \dots\dots\dots(5)^{10)}$$

$$EU_H(S_H) \geq EU_H(S_{HF}) \dots\dots\dots(6)$$

$$\lambda(P_L - Q_L\theta_L) + (1 - \lambda)(P_H - Q_H\theta_H) = 0 \dots\dots\dots(7)^{11)}$$

단, 여기에서 S_{HF} 는 완전정보하에서의 고위험 보험이용자의 계약인 [圖 1]의 S_H 를 말함. 즉 S_{HF} 는 보장범위 X 와 보험료 $\theta_H X$ 를 가지는 계약을 말함.

이 식은 균형을 이루는 계약쌍(S_L , S_H)을 선택하여 저위험이용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圖 4]는 수정된 가정에서 도출된 새로운

10) 安定的인 均衡을 얻기 위해서는 고위험이용자가 저위험이용자에게 제시된 계약을 구매하려는 誘引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위험자를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저위험자에게 제시된 계약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制約條件式 (5)는 分離條件을 만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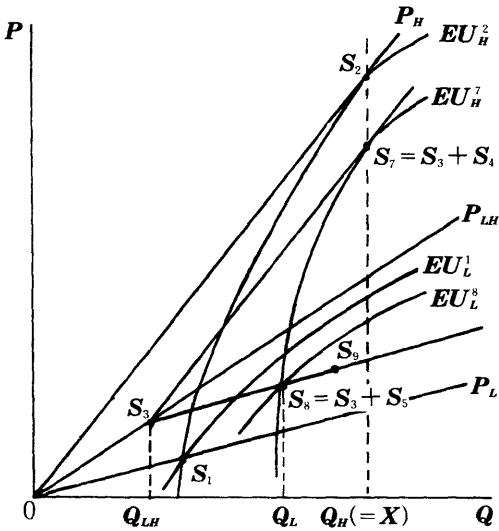
11) 式 (7)은 個別契約에서 損失이 있더라도 다른 계약의 이익이 이 손실을 상쇄하여 平均的으로 全體契約에서 손실이 없다면 이러한 계약이 판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개별 계약도 손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Rothschild and Stiglitz(1975)의 制約條件式 $P_L \geq Q_L\theta_L$, $P_H \geq Q_H\theta_H$ 와 대조를 이룬다.

균형인 補助均衡(subsidizing equilibrium)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 S_1 과 S_2 는 補助가 없는 경우의 分離均衡이다. 이 균형에서 저위험이용자는 最適의 效用을 얻지 못하므로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이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식 (4)부터 식 (7)까지에서 제시된 最適化問題를 풀으로써 파레토概念에서 우월한 균형 계약쌍을 얻을 수 있다. 즉 保險利用者の 富, 損失確率, 損失額, 그리고 危險回避程度의 값이 주어진다면 식 (4)부터 (7)을 충족하는 하나의 解가 존재하며 그 점에서 시장이 均衡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分離均衡契約은 一部分의 保障範圍를 공동으로 가지는 共同契約(S_3)과 補充契約(S_4 , S_5)으로 구성된다. 위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판매되는 共同契約(pooling policy) S_3 은 평균공정보험료선상에 있으므로 고위험이용자는 이 계약을 구매함으로써 저위험이용자로부터 補助(subsidy)를 받게 될 것이다. 위험에 따라 보험이용자에게 두가지의 補充契約(supplementary policy)이 제공되는바, 고위험자에게는 S_4 , 저위험이용자에게는 S_5 가 제공되며 이들의 保障範圍는 각각 $(Q_H - Q_{LH})$ 과 $(Q_L - Q_{LH})$ 가 된다. 따라서 고위험이용자는 共同契約 S_3 과 補充契約 S_4 를 합한 綜合契約 S_7 을, 저위험이용자는 共同契約 S_3 과 補充契約 S_5 를 합한 綜合契約 S_8 을 구매할 것이다.

補充契約들은 손실확률을 기초로 하여 保險料率이 결정되므로 기울기는 각각 公정보

[圖 4] 不完全情報下에서의 補助均衡



험료선 P_H 와 P_L 의 기울기와 같은 θ_H 와 θ_L 이 될 것이며, 따라서 [圖 4]에서는 고위험이 용자에 대해 S_3 을 통과하여 고위험 공정보 험료선과 平行하는 선상에 놓일 것이고, 저 위험이용자에 대해서는 S_3 을 통과하여 저위 험 공정보험료선과 平行하는 선상에 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고위험이용자는 共同契約 에서 저위험이용자에게 補助를 받지만 補充 契約에서는 보조를 받지 못한다. 보험사업 자는 고위험이용자가 S_3 를 구매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계약에서 손 실이 생길 것임을 알기 때문에 S_5 보다 저위 험이용자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는 S_9 와 같 은 계약을 저위험이용자에게 제공할 誘引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綜合契約雙(S_7 , S_8)에 서 分離均衡을 얻을 것이다.

綜合契約雙(S_7 , S_8)은 모든 이용자에게

初期의 分離均衡인 契約雙(S_1 , S_2)보다 더 큰 효용을 주기 때문에 파레토概念에서 優 越하다. 그러나 만일 주어진 保險利用者の 富, 損失確率, 損失額, 그리고 危險回避程度 에 따라 共同契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초 기의 分離契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초기의 分離契約에서 균형을 이룰 것 이다.

따라서 만일 보험사업자와 보험이용자간 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個別契約 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全體契約에서 손실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보험사업자가 판매한 다고 가정한다면, 補助均衡을 이루는 계약 (S_7 , S_8)이나 최소한 分離均衡을 이루는 계 약(S_1 , S_2)이 존재하며 이는 어떠한 共同契 約보다 우월한 계약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제Ⅲ장과 제Ⅳ장의 분석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보험사업자가 보험이용자의 위험을 識別하 고 分類할 수 있다면 모든 보험이용자가 그 들의 損失確率에 따른 公正한 保險料를 지 불하고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을 구 매할 때 균형을 얻을 것이고, 이 경우 보험 사업자와 보험이용자간에는 파레토最適의 配分이 이루어진다.

만약 보험사업자가 타보험사업자의 행동 을 예측할 수 있으나 보험이용자의 위험정 도를 식별할 수 없고 각 개별계약에서 손실 을 원치 않는다면 共同契約이나 分離契約을 제공하는 점에서 균형이 존재할 것이고, 이 러한 균형의 형태는 전체 보험계약자에 대

한 각 위험집단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만일 같은 가정하에서 보험사업자가 個別契約의 損益을 고려하지 않고 全體契約에 대한 손익만을 고려하는 價格戰略을 수행할 때, 分離契約에서 균형이 존재하며 그 分離契約은 고위험이용자에게 補助를 주는 綜合契約일 수도 있고, 또 전혀 보조를 주지 않는 계약일 수도 있다. 이 分離契約은 共同契約보다 파레토概念에서 우월한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균형의 존재여부와 균형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보험사업자의 보험이용자에 대한 危險程度의 識別能力, 他競爭保險事業者의 行動에 관한 豫測力, 그리고 보험상품 판매시 價格戰略이다.

V. 保險商品 價格自由化方案과 改善方向

1. 政府의 價格自由化 方向

保險商品은 一般商品과 달리 公共性和 社會性이 강하고 價格의 構成原理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產業의 發展 初期에는 정부의 보호와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보험시장이 세계 6위권에 도달하는 등 규모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최근 금융산업 전반의 開放化·國際化·自律

化 趨勢에 따라 보험산업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競爭力을 강화하고 效率性을 증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93년 12월 정부는 價格策定の 自律性을 보험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이관하여 自由競爭與件이 조성되도록 보험상품의 價格自由化計劃을 수립하였다. 정부가 예시한 단계적 價格自由化計劃은 <表 1>과 같다.

政府의 段階的 保險價格自由化計劃의 基本方向은 가급적 보험사업자가 수용하기 쉽고 실시가 용이하며 시장에 충격을 적게 주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여 98년 이후 完全自由化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生命保險에서는 保險料構成要素의 하나인 事業費 중 비중이 작은 一般管理費(維持費)를 먼저 자유화하고, 2단계에서 契約者配當部分을 자유화한 다음, 보험료의 실질적 자유화를 의미하는 豫定危險率, 豫定利子率 및 豫定事業費의 자유화는 97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 契約者配當의 自由化는 事後的인 價格의 自由化이므로 보험이용자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계약자배당은 보험료구성요소 중 일부분만을 차지하므로 계약자배당의 자유화는 一定範圍內의 價格自由化 效果만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예정이자율이나 예정사업비는 98년 이후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완전자유화되기까지는 자유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損害保險에서는 일정기간 範圍料率을 적

〈表 1〉 價格自由化 推進計劃

	생명보험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계약자배당	보험료		
94. 4	—	예정사업비 중 유지비	선박, 운송, 도난보험, 장기손해보험 중 사업비	교통사고 유무에 따른 할증·할인을
95. 4	위험률차 배당	—	수출입적하보험, 기업화재보험	가입자특성요율 (영업용, 업무용)
96. 4	—	—	주택화재, 상해, 종합, 보증보험 등	가입자특성요율 (개인용)
97. 4	이자율차 배당	예정위험률	—	기본보험료
98 이후	사업비차 배당	예정사업비 예정이자율	장기손해보험	—

資料 : 財務部, 「保險商品 價格自由化 方案」, 政策解説資料, 1993.

용한 후 自由料率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국제성이 강하며 향후 개방이 불가피한 보험(船舶保險), 계약자가 商品比較 및 價格協商能力이 있는 企業性保險(運送保險) 등에 대해 標準料率의 一定範圍內에서 보험사업자가 料率을 자율적으로 算定·適用하는 範圍料率制度를 도입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제외된 모든 企業성보험(企業火災保險 등), 그리고 3단계에서는 가계성보험(傷害保險 등)으로 範圍料率對象을 늘리며 점차적으로 範圍料率의 割増·割引幅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價格自由化는 먼저 전보험종목 중 일부분에 대하여 範圍料率을 실시하고 그 對象과 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의 單一·共同料率에서 範圍料率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自由料率

體制로 나가는 것이다.

自動車保險의 자유화계획은 保險料算出構成要素別로 충격이 적은 부분부터 範圍料率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먼저 보험료산출 구성요소 중 할증·할인율 부분에 範圍料率을 도입하고, 2단계에서 加入者特性料率部分의 價格自由化를 실시하며, 97년 4월 基本保險料의 價格自由化를 실시함으로써 自動車保險의 價格自由化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2. 改善方案

保險商品 價格自由化計劃의 推進方向은 각 보험사업부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방향은 대체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價格規制에 의한 單一·共同料

率에서 範圍料率로 제한적인 價格自由化를 시도하고 점차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한 價格自由化를 달성하는 것이다. 자유화 초기에 작은 범위내에서 料率自由化를 실시하게 되면 [圖 2]에 표시한 각 위험집단의 공정보험료선이 평균공정보험료선에 가깝게 놓일 것이고, 따라서 고위험이용자의 공정보험료선과 고위험이용자의 무차별곡선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單一·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우월한 分離契約에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커지므로 제한된 範圍內에서의 料率自由化는 全體 保險利用者의 效用增大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範圍料率에서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고위험이용자의 공정보험료선과 무차별곡선이 만날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單一·共同料率을 제시하는 契約에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價格自由化가 실시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의 손실확률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情報의 非對稱性 때문에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共同契約 혹은 分離契約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다. 分離契約이 존재하는 경우는 지금까지의 單一·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저위험계약자에게는 명백하게 유리하나 고위험이용자의 효용변화는 效用函數曲線形態의 決定要因인 高危險者의 富, 損失確率, 損失額, 그리고 危險回避程度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 지을 수 없고 따라서 전체 시장참가자의 효

용이 증대한다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共同契約에서 균형을 이루는 경우 이는 規制價格時의 單一·共同料率契約과 같으므로 가격자유화를 통한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의 손실확률에 대하여 불충분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價格自由化의 施行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範圍料率의 단계적인 확대는 현재의 單一·共同料率보다 전체 시장참여자에게 더 큰 효용을 주지 못하거나 혹은 그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므로 현재 추진중인 範圍料率의 단계적인 확대계획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참여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산업 각 부문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生命保險產業에서는 價格算出構成要素의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자유화를 통한 範圍料率의 확대를 지양하고, 주계약부분인 기본보험에서는 현행처럼 單一料率을 유지하고 補充契約인 特約保險의 保險料를 자유화하여 IV장 3절의 補助契約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규제하에서의 單一料率契約보다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을 명백히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각 생명보험 상품별 자유화추진은, 보장부분이 적어 위험률산출이 價格要素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長期貯蓄性인 生存保險商品부터 價格自由化를 실시하고 이를 養老保險性商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성 보험상품은 割引要素(discount factor)로서 金利部分이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성상품의 가격 자유화 추진은 他金融商品과의 衡平을 고려하여 金利自由化의 進行과 步調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死亡保險商品에 대한 價格自由化는 長期的인 事案으로 保險契約者の 告知義務를 보다 엄격히 하고 被保險者의 危險度를 판단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보험 사업자와 보험이용자간의 정보비대칭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損害保險의 경우에는 보험종목별로 자유화의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國際性을 갖고 있어 이미 상당부분 자율화가 진행된 종목이나 형식상 認可料率이나 실질적인 料率競爭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海上保險 중 船舶保險) 또는 價格自由化時 保險利用者의 價格比較能力이 있는 종목(特種保險 중 企業性保險인 運送, 技術賠償責任, 動産綜合保險 등)은 현재 자유화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자유화시 보험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종목부터 먼저 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特約部分에 대한 料率自由化를 실시하여 1단계에서 자유화되지 못한 종목들에 補助契約의 效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에서는 나머지 海上保險部分인 輸出入積荷保險과 火災保險 중 企業火災保險의 料率自由化를 실시하여야 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 特種保險 중 家計性保險인 傷害保險과 綜合保險, 그리고 家計性 火災保險인 住宅火災保險의 要素自由化를 실시함으로써 자유화를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危險率의 豫測이 힘든 保證保險部分도 3단계에 속할 것이다. 家計性特種保險이나 火災保險 등에는 長期性保險이 있고, 이들은 일반 생명보험상품과 같이 價格構成要素 중 豫定利率部分이 있으므로 타금융상품과 形평을 맞추기 위하여 金利自由化의 進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自動車保險은 현재 全體 損害保險市場에서 50%를 점유하고 있고 料率引上時 國民經濟的인 과급이 크기 때문에 料率의 現實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¹²⁾ 따라서 첫 단계로 單一·共同料率은 존속시키되 우선 料率의 現實化를 이루고, 다음 단계에서 特約部分의 價格自由化를 실시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保險料算出 構成要素인 基本保險料, 加入者特性料率, 割引·割増率部分을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산업 각 부문의 保險料率自由化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12) 自動車保險部門은 公正한 料率보다 낮은 보험료를 받고 있어, 要素의 현실화하는 損害保險會社들의 收支改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要素 현실화에 따른 物價上昇 등 國民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要素의 현실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가격정책이 供給者爲主로 수립되었다는 주장은 이 부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表 2〉 保險料率自由化의 改善方案

	생 명 보 험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1단계	특약보험료, 생존보험	선박, 운송, 기술배상책임, 동 산종합, 도난보험, 특약보험료	요율현실화
2단계	양로보험	수출입적하, 기업화재보험	특약보험료
3단계	사망보험	상해, 종합, 주택화재, 보증보험	할증·할인을 가입자특성요율 기본보험료

註 : 長期性은 該當 保險商品部分에 따르나 金利自由化를 고려하여 시행.
 段階別 施行日程은 각 保險部門의 與件에 따라 다름.

VI. 要約 및 結論

최근 들어 金融의 自律化·開放化·國際化 趨勢에 따른 보험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보험시장은 기존의 寡占的 市場에서 본격적인 경쟁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정부규제적인 價格政策에서 탈피하여 위협에 따라 公正한 價格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펴나가야 할 시점에 왔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93년 12월 保險商品 價格自由化計劃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政府의 段階的 保險商品 價格自由化計劃의 基本方向은, 가급적 보험사업자가 수용하기 쉽고 실사가 용이하며 시장에 충격을 적게 주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여 98년 이

후 完全自由化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진중인 政府의 價格自由化計劃의 細部的인 推進方向은 각 보험사업부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방향은 대체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價格規制에 의한 單一·共同料率에서 範圍料率로 제한적인 價格自由化를 시도하고 점차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한 價格自由化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타금융산업의 가격자유화계획과 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다.

保險商品의 價格自由化는 自由競爭原理의 導入에 따른 保險事業者의 經營效率性 增大와 競爭力 強化 그리고 保險利用者의 利益保護 強化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자유화추진계획에서 보험사업자의 財務狀態 및 經營與件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으나 보험이용자의 效用과 利益 增大는 자유화추진방향의 중요한 決定要素로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격자유화정책이 供給者側面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정부는 보험사업자의 經營不實化나 支給能力惡化 등을 고려하여 自由化의 幅 및 對象을 결정함으로써 價格自由化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기대손실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나, 보험이용자나 전체 시장참여자 측면에서 그들의 效用이나 利益을 極大化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타금융산업의 상품가격은 資金의 需要·供給 原則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반하여 보험상품의 가격은 大數의 法則(law of large numbers)을 근거로 한 위험의 발생확률이 기본적인 價格決定變數가 되므로, 보험산업은 타금융산업과 비교하여 전혀 다른 價格算出構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금융산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가격정책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 방안은 타금융산업에서 사용하는 가격정책방향의 틀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보험자의 위험확률에 대한 정보는 가격산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나 보험시장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不完全競爭市場이기 때문에 가격정책을 수립할 때 시장내의 정보불균형현상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가격자유화계획을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요청되는바, 本稿는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被保險者의 危險程度에 대한 정보

의 불균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 市場參與者의 效用과 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政策當局이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보험산업의 독특한 價格構造를 고려하여 연구하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保險事業者와 保險利用者간에 情報의 非對稱性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모든 보험이용자들은 충분한 保障範圍의 契約을 구매함으로써 주어진 조건에서 效用의 極大化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파레토最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시장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이용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料率과 保障範圍를 위험에 따라 差別化하지 않는 單一·共同料率을 제시하는 契約을 主契約으로 구매하게 하고, 補充契約인 特約部分에서 價格을 차별화하여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價格에서 서로 다른 保障範圍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주어진 조건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基本保險部分은 기존의 單一·共同料率을 사용하고 特約保險部分의 料率은 자유화하여 각 이용자들이 그들의 危險程度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에서 스스로 적절한 保障範圍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하에서 이러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이는 기존의 單一

· 共同料率에 의한 契約보다 파레토概念에서 우월한 契約이 되어 시장전체에 純利得(net gain)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告知義務의 強化, 危險分類 및 選擇 業務의 效率化 등으로 보험시장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실질적인 가격의 완전 자유화를 실시하여 파레토最適의 均衡을 이

루어야 한다. 따라서 政府는 價格政策을 추진할 때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시장참여자 와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最適의 契約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하며 保險商品의 價格自由化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財務部, 「保險商品 價格自由化 方案」, 政策 解說資料, 1993.

_____, 「第1段階 保險商品 價格自由化 施行」, 報道資料, 1994.

Akerlof, G., "The Market for Lemons: Quantitative Uncertainty and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0.

Crocker, K.J. and A. Snow, "The Efficiency Effects of Categorical Discrimin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1986.

Hoy, M., "Categorizing Risks in the In-

surance Indus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2.

Miyazaki, H., "The Rat Race and Internal Labor Markets," *Bell Journal of Economics*, Autumn 1977.

Rothschild, M. and J. E. Stiglitz, "Equilibrium in Insurance Markets: An Essay 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Inform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6.

Spence, M., "Product Differentiation and Performance in Insurance Marke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8.